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약관분쟁조정협의회(이하 ‘협의회’)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(’23.6.20. 공포, ’23.12.21. 시행)됨에 따라, 그러한 소송중지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요구됨

3. 주요내용

- 가.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통지하고(안 제8조의8 제1항), 협의회는 조정절차 진행(동조 제3항)
- 소송절차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법 취지에 맞추어,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소송중지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부과
 - 협의회는 위와 같은 소송중지 사실을 통지받으면 조정절차를 진행
- 나.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

등을 수소법원에 통지(안 제8조의8 제2항)

- 수소법원이 소송절차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,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경합된 경우에 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·주소(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그 대표자의 성명·주소), 분쟁조정 신청일,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를 알려야 할 의무 부과
- 국회 법개정 과정에서도 ‘협의회가 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’는 의견이 제시됨(’23. 5.24.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2소회의)

다.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조정 결과가 도출되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결과 통지(안 제8조의9 제3항)

- 조정이 각하되거나 종료됨으로써 조정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그 사실을 알고 소송절차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, 협의회가 수소법원에 그러한 각하·종료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부과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2023. 8. 25. ~ 10. 4.

3) 행정규제 : 비규제 사항
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때”를 “때 또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때”로, “이를”을 “그 사실을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소 제기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.

1.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(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)

2. 분쟁조정 신청일

3.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

③ 협의회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8조의9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지

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8(소 제기 등의 통지)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(訴)를 제기하거나 「중재법」에 따른 중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.	제8조의8(소 제기 등의 통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때 또는 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 절차를 중지한 때--- 그 사실을 ---.
<신 설>	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소 제기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. 1.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(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) 2. 분쟁조정 신청일 3.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

<u><신 설></u> 제8조의9(분쟁조정종료 등의 보고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<u>③ 협의회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</u> 제8조의9(분쟁조정종료 등의 보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.</u>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451